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대형가속기구축및지원에관한
법률시행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상임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20791호, 2025. 3. 18. 제정·공포, 2025. 9. 19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대형가속기의 규모,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, 안 제3조)
- 나. 대형가속기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4조)
- 다.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,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, 지원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~제9조)
- 마. 사용료·대부료 감면, 국유재산·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, 안 제11조)
- 바.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유재산특례제한법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○○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5. 00. 00. ~ 00. 00.) 예정

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형가속기의 규모) 「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”이라 함은 구축 또는 운영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가속기를 말한다.

1. 에너지가 1GeV 이상 그리고 이용가능한 전자빔 전하량이 100pC 이상이 되도록 전자빔을 가속할 수 있는 장치
2. 핵자당 에너지가 400MeV 이상이 되도록 탄소 이온을 가속할 수 있는 장치
3. 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」 제82조의2제2호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
4. 빔 에너지가 100MeV 이상 그리고 빔 전력이 10kW 이상이 되도록 양성자를 가속할 수 있는 장치

제3조(대형가속기 지원사업)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대형가속기 관련 장치 및 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
2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

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실태조사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
시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련 기술 확보 방안 등을 효율적으로
수립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
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) ① 법 제5조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
지급한다. 다만,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
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.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
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
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제6조(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) 법 제6조제2항제3호에
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대형가속기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대형가속기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·관리 등을 위하여
필요한 사항

제7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
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을
위하여 적절할 것

2.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·장비를 갖추는 것
3.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
4.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

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(이하 “전문인력 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출연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
제9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1. 강의료와 수당
2.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

3.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

4.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

제10조(사용료·대부료 감면)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·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(「국유재산법」 제28조, 제29조 및 제4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·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단,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의 부지 선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, 해당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·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.

③ 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·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, 그 감면기간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해당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④ 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·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제1항, 제27조제1항, 제43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

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.

제11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)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납부 기일을 연장하거나,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는 연 100분의 4를 넘을 수 없다.

제12조(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)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대형가속기 시설·장비 공동이용
2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2 - 4661